

변경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**NH-Amundi 올바른지구 OCIO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**
2. 효력발생일 : 2026년 9월 1일
3. 정정사유 :
 - 온라인 퇴직연금(고액) 클래스(C-P2le Class) 추가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제3조(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및 종류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7. <생략> 18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7. <현행과 같음> 18. Class C-P2le(퇴직연금) 수익증권: 최초 가입시 20억원 이상 매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, 온라인(On-Line)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7. <생략> 18.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7. <현행과 같음> 18. Class C-P2le(퇴직연금) 수익증권
제37조(보수)	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17. <생략> 18. <신설>	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17. <현행과 같음> 18. Class C-P2le(퇴직연금)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3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5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4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0

부칙	-	(변경시행일) 이 변경신탁계약은 2026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----	---	---